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에 관한 연구

서진석*

요 약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십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십,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십,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A study on America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Seo Jin Seok*

ABSTRACT

A study on America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in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Special Event Safety and Security, Community Policing, Alarms, Investigations, Electronic and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s. Many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s have significantly changed how policing is done with respect to field operations, particularly patrol and access control. Some areas in which these collaborations have produced notable results are described here.

Key words :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Community Policing, Alarms, Investigations, Electronic and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s

1. 서 론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로서 자치사상을 기반으로 치안조직도 다양한 자치체 치안기구들과 민간의 치안기구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합중국(united states)이다. 다수의 민족 간에는 상이한 종교, 다양한 문화가 한데 융화되어 거대한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류 공통의 염원을 실현한 것 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미국의 사회문제로는 대체로 인종문제, 마약문제, 강력범죄문제, 총기문제, 테러로부터의 불안 그리고 성과 에이즈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질서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것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은 치안조직들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미국의 치안조직은 다양성을 특색으로 한다. 공적·사적인 치안기구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면서 사회질서유지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치안지수를 향상시키고 범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한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업적들을 참고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2.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찰경비(Public law enforcement)란 국가 공권력 중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임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 활동을 말한다(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12). 여기에 반하여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경찰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 Service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4).

이와 같은 민간경비와 경찰경비의 개념과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경비 즉 경찰은 범죄 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그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for public) 행하는 것인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하여(for specific client)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 작용면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 요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윤근, 1989: 109).

그러므로 민간경비와 경찰경비 공히 범죄예방 및 감소, 질서유지 등은 공통의 목표이나 민간경비는 사전적·예방적 성격이라면 경찰경비는 사후적·조치적 성격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2.2 Partnership의 전제조건

사회적 치안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관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윤근, 1999: 6).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찰은 법적 권위(legal authority)를 부여받

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에 비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규제력을 갖는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경쟁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의 일단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민간경비는 경찰이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보며 양자의 역할분담은 이러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한다.¹⁾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2.3 Partnership의 필요성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에서 전담할 것인가, 민간부문에서 전담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절하게 Partnership을 강화할 것인가의 기준은 다양한 치안행정수요에 치안조직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감과 만족감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치안활동은 공권력 뿐 아니라 국가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선진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범죄예방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진석, 2000: 48-49).

1) 이는 민간경비성장예에 관한 '공동화이론'에 근거한다. 공동화이론(Vacuum theory)은 한 사회에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이론이다. 즉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력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겨나는 갭(gap) 즉, 공동(空洞)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것이다(이윤근, 1999: 6).

3.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을 위한 Part-nership 사례²⁾

3.1 현장운영

3.1.1 사업개선지구

강력한 공공안전요인과 함께 사업개선지구(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는 파트너십의 매우 우수한 사례 중 하나이다. BIDs는 지구내의 재산소유주와 사업가들에 의해 지불되는 특별한 과세에 의해 지원되는 공식조직이다. 지역사회의 요구나 예산에 종속하는 BIDs는 공공안전이나 경비, 공중위생이나 유지관리(종종 담벼락 낙서제거 등을 포함하는), 마케팅이나 촉진책, 자본개선, 여행 및 방문자 서비스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제공한다.

BID는 공공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에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대형 BIDs는 민간경비와 경찰(밑에서 예를 든 the Grand Central 파트너십에서 BIDs는 비범죄의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모두에 의해 추가의 순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많은 BIDs는 "공공안전팀", "다운타운 사절" 또는 유사한 지위인 지역사회서비스 대표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CPR/응급처치, 그리고 기타 다른 교육훈련을 받는다. 광범위한 교육훈련 사례 중 하나는 2006년에 그들의 공공안전팀 멤버들을 위한 BID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시작하였던 LA의 다운타운 중심 사업개선지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문화적 다양성, 약물중독인식, 테러리즘 대응, 범죄현장보전, 응급처치, 노숙자 및 정신병자원조 활동 등 39개 분야의 교육내용을 갖고 있다.

1988년에 범인화원 뉴욕시 대 중앙 파트너십(GCP: Grand Central Partnership)은 맨하탄의 중간지구에 있는 68개의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공안전 경비력은 GCP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GCP은 근린지구거리의 순찰활동과 수사활동에 있어 NYPD를 보

2) The Law Enforcement-Private Security Consortium, Operation Partnership(www.cops.usdoj.gov. 요약 정리하여 인용하였음.

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NYPD에 의해 교육되어진 45명의 정복 공공안전관리관을 고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국의 승인하에 대략 15명의 NYPD 관계자가 그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GCP와 함께 일하고 있다.

볼티모어 다운타운 관리지구의 다운타운 파트너십은 106개의 블록을 포함하고 있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안전서비스의 추가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안전가이드, 지시자, 안전에스코트서비스 제공, 기업활동 체크, 노숙자에 대한 원조활동, 길거리 구걸 제지,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활동
- 다운타운 공공안전 연합, 경찰과 연계한 파트너십, 빌딩 및 호텔경비, 재산 및 기업소유주/관리자, 주검사 사무소, 연방법집행기관, 그리고 기타. 제휴활동은 이메일시스템이나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 80개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는 비디오순찰프로그램
- 다운타운 거주자, 근로자, 그리고 방문자(프린트된 자료,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 노숙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을 나누어주기 보다는 볼티모어 노숙자서비스에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관할지구 전체에 걸쳐 현금함을 제공하는 “변화 만들기” 프로그램

위의 사례는 대규모 BIDs에서 시행하는 접근법이지만 다양한 활동들은 소규모 그룹에 좀더 적합하다. 예를 들면 델라웨어 웰빙턴에서 다운타운 비전은 민간경비에 의한 순찰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CCTV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경찰을 위한 보조적인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3.1.2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경찰과 민간경비는 특별한 행사에서 생활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랫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과정의연구소는 최근에 의회와 COPS사무소가 발주한 특별한 행사에 있어 공공안전에 관한 국가적 연구를 완료하였다. 인터뷰나 사례연

구는 올림픽, G8정상회의, 슈퍼볼이나 NASCAR레이스와 같은 스포츠 행사, 그리고 캔터키 더비,³⁾ 그리고 July 4th(7월 4일 국경일 행사)와 같은 기타 행사들, 그리고 참회의 화요일 경축일,⁴⁾ 대학 풋볼대회, 카운티 전시회(농산물이나 가축 품평회), 그리고 문화행사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집회에서의 안전과 경비를 연구하였다. 이들 행사 중 거의 대부분은 법집행과 민간경비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의 특별행사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통하여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다.

3.2 경보(Alarms)

경보산업 관점에서 사업자나 개인적 주택소유자가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용 경보를 설치할 때, 민간경비나 경찰은 범죄예방이나 대응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서로 다른 다양한 파트너십들은 높은 오경보율 때문에 발전되었다. 민간경비 및 경찰 협의체들은 오경보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향해 조정하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협력하여왔다.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IACP는 5개의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경보율 감소정책에 대한 연구를 후원하였다. 최근에 경비경보산업연합(the Security Industry Alarm Coalition)은 동일한 목표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좀더 많은 경보관련 법규모델이나 정보가 SIAC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3.3 수사

경찰과 민간경비 파트너십은 컴퓨터, 금융, 그리고 지적재산범죄의 수사를 위해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다. 수사상의 협력은 사실상 다른 모든 유형의 범죄나 대규모 산업(교통, 소매, 통신, 그리고 기타 많은 다른 분야들)을 가로지르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몇몇의 파트너십은 아래와 같은 수사상 경찰과 민간경비 파

3) 미국 Kentucky주 Louisville의 Churchill Downs 경마장에서 매년 5월 첫째 토요일에 거행되는 경마.

4) 사순절(Lent)이 시작되는 전달로 사육제(carnival)의 마지막 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요란한 축제를 열; 미국에서는 남부의 각지에서 행해짐.

트너십의 전문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 남부수송경비협회의회는 10만불 가치 이상의 화물을 포함하는 도둑맞은 화물트레일러자동차를 되 찾았다.
- 모바일 폰 사업자단체(Mobile Phone Interest Group)는 수사되어진, 그리고 기소가 발매진 기타 조직화된 절도 등 2백만불 상당의 모바일 폰 절도를 증지시켰다.
- 국제금융범죄협회(IAFC)는 약 100만불 상당의 손실예방에 상당하는 콜로라도 은행에서의 나이제리아 통화 교환음모를 저지하였다. 이외에도 부도수표 현금화, 전신송금사기, 그리고 기타 금융범죄 등을 붕괴시킨 많은 사례들이 있다.
- 경비 및 경찰정보네트워크는 상습적인 은행강도나 10만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유소 절도 등을 해결함으로써 파트너십의 신뢰를 높였다.
- 아이다호주 보이시 시의 조직화된 소매점 절도/사기 예방 및 차단네트워크(BORT/FIN)는 초기 식별과 절도, 환불사기, 신용카드사기, 마약밀매, 차량절도, 무장강도, 폭행 등이 포함된 수백 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기여하였다. 동시에 수백만불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회복하였고, 대규모의 조직화된 도둑 일당들을 해산시켰다.

3.4 컴퓨터 및 금융범죄 수사

미국 비밀경호국 컴퓨터범죄태스크포스 네트워크는 국가의 가장 큰 국토안보관련 관심사 중 몇몇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비밀경호국은 다른 법집행기관이 민간경비산업의 대표자가 풍부한 기술적 전문지식이나 연구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보조적인 형사사법관할이나 자원을 태스크포스에 가져 온다고 설명한다.

2007년 초에 24개의 ECTF가 뉴욕에 있었다. 이들 중 최초의 뉴욕 ECTF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보조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모델로서 2001년의 애국법(USA PATRIOT Act)에 의해 규정되었다. 비록 그것이 강조된 영역, 특별한 파트너, 그 외의 여러 가지 면에서 태스크포스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지니

고 있지만 그들의 통상적인 목적은 국가의 금융이나 주요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방, 탐지, 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있다.

4.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4.1 정책적 문제점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강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상호존중의 결여, 정보교환의 부재, 상호협조체제의 미흡,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 부족, 상호 역할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들 수 있다.

4.1.1 상호존중의 결여

대체로 경찰은 자신들이 민간경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위 및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존중의 결여는 잘못된 정보, 불신, 편견 등에 의하여 스스로 조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은 범죄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전문가로 생각하며, 민간경비원은 인력관리 체계나 선발기준과 훈련을 달리 실시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경찰관들은 그들의 역할을 대중에 대한 봉사성 때문에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의 경비활동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일부 민간경비원들은 이것을 위선이라 생각한다.

4.1.2 정보교환의 부재

일부 경찰관에 의해서 생겨난 민간경비와 경찰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지위구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많은 경찰관들이 스스로를 민간경비원 보다 높은 수준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민간경비와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양자의 관계상 호호성과 지위불평등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유지가 어렵게 보인다.

의사소통문제는 범죄경력 기록의 분야에서 가장 뚜

렸하게 나타난다. 민간경비는 고객이나 경영자 그리고 민간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기타 범죄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찰조직의 정보교환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4.1.3 상호 협력체계의 미비

PATF의 조사에서는 경찰의 1/3만이 민간경비와의 연락을 위한 사무실이나 사람을 두고 있는데 반해, 어떤 연구는 60%가 민간경비와의 연락을 전담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상호협력 결여의 분야로서 경찰은 민간경비의 상주계약 형태의 경비시스템 종사자나 그 외 어떠한 형태의 경비시스템도 하나의 통일된 전문적인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원활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비산업 전체적인 연합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4.1.4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민간경비 범죄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경찰이 민간경비에 대한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경찰은 민간경비가 책임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범죄 예방이나 재산보호 등에 있어서 민간경비가 갖는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민간경비책임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경찰관이 그들 훈련의 대부분을 성문법률, 범죄수사, 순찰, 현장검문, 교통법규, 사고조사 등의 공공관계 차원에서 대부분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담당하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관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 분야에 관하여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에 범죄수사나 범인 체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법체제 내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예방이 경찰의 임무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경비 분야에서 이 분야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4.1.5 상호 역할기준의 불명확성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또 한가지 주제는 경찰이 스스로를 전문적 조직으로 인식하면서 민간경비의 많은 분야를 비전문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엄격한 선발기준, 엄정하고 포괄적인 인사과정, 교육적 배경, 임무부여 이전의 강도 높은 훈련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에 있어서 민간경비보다 경찰이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적인 최소한의 기준없이 민간경비의 본질적인 질적향상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민간경비와 경찰 모두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측면에서 각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되고 상세한 업무지침을 제시하는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범죄예방과 감소라는 두 기관의 보완적 접근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 위에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정책적 대안 탐색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자회의로서 관할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범죄예방방안으로 그 지역 범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조직의 구축과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특정한 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 등을 경찰과 민간경비 합동으로 실시하여 Partnership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담책임자제도로써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협조와 상호조직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들을 양 조직에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방법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2중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활동범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절차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분담과 역할기준을 설정하여 두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범죄예방활동이나 범죄대응에 있어 비상연락망의 설치나 경보대책 수립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강화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자문서서비스센터 운용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율방범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간경비 상품의 종류나 민간경비업체의 추천, 그리고 경찰방범활동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 공동으로 경비자문서서비스센터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대안은 양 조직 간의 깊은 이해와 상호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사회치안기구들인 경찰과 민간경비가 Partnership을 통하여 사회치안수준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와 Partnership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현장에서 행사안전 및 경비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리고 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에 공동 대처하는 사례, 범죄수사, 컴퓨터 및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상호존중의 결여, 정보교환의 부재,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상호 역할기준의 불명확화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자회의, 전담책임자제도, 상호역할기준설정, 비상연락망과 경보대책의 수립, 경비자문서서비스센터의 운용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의 사례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 범죄 정보의 교환과 기계경비 경보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

대처는 기계경비 오경보로 인한 112 경찰력 낭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제도의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오래 전부터 장구한 세월동안 두 집단의 임무, 권한, 그리고 책임 소재 등에 있어 서로 혼동되고 중복되어 왔다.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구별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같은 현상은 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많은 접촉과 상호관계에 있어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집단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두 집단 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느냐와 더 나아가서 범죄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전차 낮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즉 고객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과 봉사성 그리고 범죄예방기능 및 기계에 의한 과학적 경비체제 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제한된 세원에 의한 국가 예산상의 문제와 제한된 인적 자원 그리고 임금의 인상, 해마다 늘어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며 책임성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예방에 대한 기능과 경찰업무 중 보조적 기능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의 합리적 경영과 과학적 범죄예방 능력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찰은 사후적 범접행적 기능에 전념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경영의 합리화로 비용의 최소화 노력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2]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Report of the Tasks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3] 이윤근, "한국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4]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육서당, 1999.
- [5] 서진석,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남: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0.
- [6] The Law Enforcement-Private Security Consortium, Operation Partnership(www.cops.usdoj.gov).

[저 자 소 개]



서진석(Jin-Seok Seo)

1987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1992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석사
2000년 2월 경원대학교 행정학박사
2002년 3월~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부교수

email : woonlim@hanmail.net